

1. 개정이유

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,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038호, 2024. 1. 16. 공포, 2025. 1. 1 7. 시행)됨에 따라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 및 내용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,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, 내용 등 규정(안 제3조 및 제3조의2 개정)
- 나.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업무 자격요건 마련(안 제6조의2 신설)
- 다.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·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서식 마련(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관한”을 “관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교육은 1회로 하고,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

2.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가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
나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

다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교통약자서비스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교육은 연 1회로 하고,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.

2.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가.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

나.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

다.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

라.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

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시간, 내용 등은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해당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”은 “특별교통수단 운전자”를 말한다.

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직원연수·조회·회의 등의 집합교육

2.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

3. 체험교육

⑥ 법 제13조제5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”란 교육일시·방법,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”란 교육일시·방법,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.

④ 교통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교통행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요건)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업용 자동차”는 “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동차”로 본다.

② 영 제14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의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2.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3. 영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운전·범죄경력조회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자	처리기간 14일
요청인	기관명	부서명	
	담당자(성명)	전화번호	
조회 대상자	성명	한글	영문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		
	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등)		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운전·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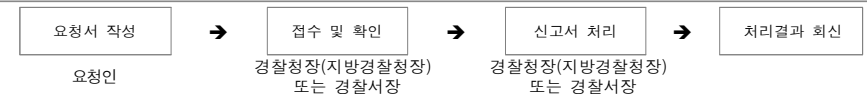
○○경찰청(경찰서)장 귀하

첨부서류	1.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운전·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.
2.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. 다만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3.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운전·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조회 대상자	성 명	한글	영문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		
	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등)		

본인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의4와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로서,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부동의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부동의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〇〇경찰청(경찰서)장 귀하

작성방법

-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.
-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. 다만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- 수집된 개인정보는 운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운전·범죄경력조회 회신서

조회 대상자	성 명	한글	영문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		
	주소	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등)	

조회내용

운전경력	종별	범죄경력	[] 결격사유 있음
	발급일자(취소·정지)		[] 결격사유 없음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〇〇경찰청(경찰서)장 직인

작성방법

-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.
-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. 다만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-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등)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·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<u>관한</u> 교육을 받아야 한다.	제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</u> -----.
<신 설>	1. 교육은 1회로 하고,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
<신 설>	2.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u>가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</u> <u>나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</u> <u>다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</u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로 하고,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

한 사항

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교통약자서비스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교육은 연 1회로 하고,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.
2.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가.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
 - 나.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
 - 다.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
 - 라.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

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시간, 내용 등은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해당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”은 “특별교통수단 운전자”를 말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(생략)	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. 1. 직원연수·조회·회의 등의 집합교육 2.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. 체험교육 <삭 제> ⑤ (현행과 같음) ⑥ 법 제13조제5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”란 교육일시·방법,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.
---	--

제3조의2(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제3조의2(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<삭 제>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”란 교육일시·방법,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자료를 말한다. ④ 교통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교통행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6조의2(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요건)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
--	---

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업용 자동차”는 “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자동차”로 본다.

② 영 제14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2.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3. 영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운전·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